◉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44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34호, 2024. 08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) 제1조 및 2조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) 제2조 및 3조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)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 유독물	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 유독물
질의 지정고시 부칙	질의 지정고시 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 제1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), 제23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, 같은 법 제24조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 기준등) 및 제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제1조(시행일)
제2조(경과조치)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,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2조(경과조치)

현 행 개 정 안	
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	
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 5	: <u>2026년</u>
업허가: <u>2025년 1월 1일</u> <u>7월 1일</u>	
6. · 7. (생 략) 6. · 7. (현행과 같음)	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 유독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	3-41호 유독물
질의 지정고시 부칙 질의 지정고시 부칙	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 제2조(적용례)	
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	
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	
(이하"화관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	
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2025년 8월	7일
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	
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적용한다.	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 제3조(경과조치)	
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	
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 <u>자(화관</u> 법	법 제24조 및 제
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<u>2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</u>	따른 적용일 이
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	<u> </u>
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	
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 5	·: 2026년
업허가: <u>2026년 1월 1일</u> 7월 1일	<u> </u>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6. · 7. (생 략) 6. · 7.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 안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	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
질의 지정고시 부칙	질의 지정고시 부칙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	제2조(적용례)
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	
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	
(이하"화관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	
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	<u>202</u> 5년 8월 7일
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	
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적용한다.	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	제3조(경과조치)
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	
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	<u>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</u>
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	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
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	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)는
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